

창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가단1152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4.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제88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3. 2. 17.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F는 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9946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5. 3. 13. “피고(D)는 원고(주식회사 F)에게 8,035,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망인은 2018. 5.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D, 피고, G, 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 상속인들은 2020. 4. 27.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 중 D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복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등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별지